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90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7일 김영옥, 강석주, 최호정 의원 (찬성 15인)
-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-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4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영옥, 강석주, 최호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,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- 아울러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협의회의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모범적인 사례를

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 함(안 제4조제2항).
- 나.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규정을 신설함 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협회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
〈표〉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예산지원) ① (생략)	제4조(예산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</u> ----- 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제4조의2(공유재산의 우선임대)</u> <u>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2에 따라 협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</u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6조 (생략)</p>	<p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표창) 시장은 협회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

2 개정안의 주요내용

1)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구체화 (안 제4조)

-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조직체들에 의해 구성된 민간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1)에 의해 설립·운영되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임.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중앙협의회”라 한다)와 시·도 단위의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시·도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의 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총회원 수는 504명(단체 446, 개인 58명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최근 3년간 협의회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 및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- 예산은 보조금 형태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구성되어 있음.

〈표〉 최근 3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예·결산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집행액	잔액
2021	889,617	800,938	88,679
2022	902,560	831,598	70,962
2023	968,069	904,130	63,939

- ‘24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은 10억 6,175만원으로 주요 추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.

※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‘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

○ 협의조정사업

- 사회복지 관련 행사 개최
- 국제협력교류
- 우수직원 국내외 연수
-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운영
- 사회복지협력
- 직능협회 운영지원 : 16개 단체 대상 입주분담금 지원
- 사회복지법인 업무 활성화 : 경영 컨설팅 및 교육(연중)

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
2.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
3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
 - ② 중앙협의회, 시·도협의회 및 시·군·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,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③ 중앙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, 인가,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6항·제7항, 제22조, 제23조제3항, 제24조,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본다.
 - ④ 중앙협의회, 시·도협의회 및 시·군·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협의회육성사업

- 협의조정 : 시·도협의회 교류(연중), 구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숍
- 위원회 운영(10개) 및 회원관리

○ 사회복지교육사업

- 사회복지 직급별 교육
- 사회복지 전문 교육
- 사회복지 재무회계교육
- 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교육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신건강지원 역량강화

○ 정책개발사업

- 정책활성화 : 정책간담회 및 서울복지포럼
- 조사연구

- 시·도 단위의 광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해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임. 또한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7조²⁾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또한 서울시는 2021년 본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협의회의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바 있음.
- 다만, 본 개정안은 지원 시 지원 경비의 성격과 항목을 검토해 예산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.

2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7조(각 협의회의 운영경비)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2)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및 표창 (안 제4조의2 및 제6조 신설)

- 동 조례개정안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우선임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·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사용허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⁴⁾의 방법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보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공유재산의 임대를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, 사회복지협의회는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함.

3) 집행부서 의견 : 원안가결

-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였

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4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3.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으며, 사회복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하다는 입장임.

3 종합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우선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표창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함.
- 한편,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민간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에 대해 표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수여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최호정
의원(3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상혁,
박영한, 허·훈, 황유정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'협의회'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,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- 아울러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협의회의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 함(안 제4조제2항)
- 나.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규정을 신설함 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규정을 신설함 (안 제6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원”을 “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유재산의 우선임대)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표창) 시장은 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생 략)

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
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
다.

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분	관련 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(예산지원)	×	추가 비용수반 없음 ¹⁾
2	제4조의2(공유재산의 우선임대)	×	별도 비용수반 없음 ²⁾
3	제6조(표창)	△	표창 제작 소요금액 ³⁾ 발생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동 개정안 제6조(표창)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, 관련부서 확인결과 표창대상이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 희 선
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 추계분석관 손 제 승
 ☎ 02-2180-7954
 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동 개정안 제4조(예산지원)는 현행 같은 조례 같은 조항의 '지원'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에도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에 추가적 재정소요는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2) 임대료 증감에 영향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3) 사업시행 시 연례반복적 소요비용으로 표창대상 수에 따라 향후 예산(사무관리비)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
 - 다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